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6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이홍재 이강주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이홍재 과징금 20만원
이강주 과징금 60만원

□ **(원안의결)** 이홍재 과징금 20만원
이강주 과징금 6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이홍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이홍재는 2021.9.2. ㈜케이씨산업의 대표이사 이강주가 퇴임함에 따라 2021.9.9.까지 특별관계자 해소와 관련하여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보고(2022.11.9.)하고,

- 특별관계자 ㈜◎◎◎◎◎가 2022.10.31. ㈜케이씨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(952,380주 상당)를 취득하여 2022.11.7.까지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보고(2022.11.9.)하는 등,

- 2021.9.2.~2022.11.7.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□ 이강주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이강주는 2021.9.2. ㈜케이씨산업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이홍재와 특별관계자 관계가 해소되었기에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미보고하고,

- 보유 중이던 ㈜케이씨산업 주식 중 83,000주를 2024.8.22. ●●● 외 3인의 쌍방특별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들을 특별관계자로 추가하는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,

- 2021.9.2. ~ 2024.8.29.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舊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9조 제4항 제2호, 제147조 제1항